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법	시행령	시행령 개정안	비고
<p>제 6 조의 3 등록업자의 시공</p> <p>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가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기술능력, 주택건설실적, 주택규모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 4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 10 조의 2 건설업법적용배제 기준</p> <p>① 법 제 6 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법 제 4 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등록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주택건설실적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금 2억 원 이상.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4억 원 이상으로 한다. 2. 건설기사 1급 1인과 토목분야 기술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분야기술자격취득자 4인 이상 3. 최근 3년간의 주택건설 실적이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및 경기도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기타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호 또는 50세대 이상 <p>② 제 1 항의 등록업자가 건설업법 제 4 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할 수 있는 주택규모는 5층 이하(건축법 시행령 제 53 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층 이하)이고 당해 주택건설의 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의 10배(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한다.</p>	<p>제 10 조의 2 건설업법적용배제 기준</p> <p>① 주택을 건설 (이를 위한 대지조성사업포함) 할 수 있는.....</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제 1 항의 등록업자가 건설업법 제 4 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5층(건축법 시행령 제 53 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층)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7층(건축법 시행령 제 53 조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또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p>	<p>주택건설의 범위에 이를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명문화함으로써 의문의 소지를 없앴</p> <p>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등록업자에게 제한적으로 고층시공권을 부여함으로써 토지이용도 제고 및 주택산업 육성</p>

법	시행령	시행령 개정안	비고																				
<p>제16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p> <p>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p>	<p>③ 등록업자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p> <p>제17조 제 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p> <p>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중 제 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자와 매입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별표 3] [부표]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표</p> <table border="1" data-bbox="377 1503 696 1682"> <thead> <tr> <th>매입대상</th> <th>매입금액</th> </tr> </thead> <tbody> <tr> <td>6. 수렵면허</td> <td></td> </tr> <tr> <td>가. 제1종면허</td> <td>500,000</td> </tr> <tr> <td>나. 제2종면허</td> <td>100,000</td> </tr> <tr> <td>다. 제3종면허</td> <td>50,000</td> </tr> </tbody> </table> <p>②-③ (생략)</p>	매입대상	매입금액	6. 수렵면허		가. 제1종면허	500,000	나. 제2종면허	100,000	다. 제3종면허	50,000	<p>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 제 1항의 등록업자가 건설업법 제 4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이를 위한 대지조성사업포함)의 범위는 당해 주택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과 준비금(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의 10배(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p> <p>④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과 준비금의 합산산정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자본증명보고서에 의한다.</p> <p>⑤-----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p> <p>-----</p> <p>-----</p> <p>[별표 3] [부표]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표</p> <table border="1" data-bbox="720 1503 1039 1682"> <thead> <tr> <th>매입대상</th> <th>매입금액</th> </tr> </thead> <tbody> <tr> <td>6. 수렵면허</td> <td></td> </tr> <tr> <td>가. 제1종면허</td> <td>50,000</td> </tr> <tr> <td>나. 제2종면허</td> <td>10,000</td> </tr> <tr> <td>다. 제3종면허</td> <td>5,000</td> </tr> </tbody> </table> <p>②-③(현행과 같음)</p>	매입대상	매입금액	6. 수렵면허		가. 제1종면허	50,000	나. 제2종면허	10,000	다. 제3종면허	5,000	<p>사업규모산정기준이 되는 자본금산정에 있어 준비금을 합산함으로써 재무구조가 양호한 사업자를 우대하여 주택공급확대에 기여토록함.</p> <p>수렵면허시 매입하는 주택채권매입액 인하조정으로 민원해소</p>
매입대상	매입금액																						
6. 수렵면허																							
가. 제1종면허	500,000																						
나. 제2종면허	100,000																						
다. 제3종면허	50,000																						
매입대상	매입금액																						
6. 수렵면허																							
가. 제1종면허	50,000																						
나. 제2종면허	10,000																						
다. 제3종면허	5,000																						

법	시행령	시행령 개정안	비고
<p>제38조의3 국민주택의 전매행위등의 제한</p> <p>① 국민주택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 국민주택은 당해 주택을 최초로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매매, 증여, 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으며,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 공급한 국민주택은 타인에게 이를 전대(그 권리의 양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국민주택사업주체(제6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 ⑥ (생략)</p> <p>제50조 권한의 위임등</p> <p>① 건설부장관은 이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주택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중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필요</p>	<p>제37조 국민주택의 전매행위등의 제한등</p> <p>① 법 제38조의 3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이를 6개월로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민주택에 대하여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심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② - ⑤ (생략)</p> <p>제46조 권한의 위탁</p> <p>건설부장관은 법 제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주택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게 위탁한다</p> <p>1.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로부터의 주택건설실적의 접수와 그 통계의 유지, 관리</p>	<p>제37조 국민주택의 전매행위등의 제한등</p> <p>① 법 제38조의 3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이를 6개월로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국민주택에 대하여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심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②—⑤(현행과 같음)</p> <p>제46조 권한의 위탁</p> <p>건설부장관은 법 제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주택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게 위탁한다.</p> <p>1.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로부터의 주택건설실적의 접수와 그 통계의 유지, 관리</p>	<p>행정 간소화</p>

법	시행령	시행령 개정안	비고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2.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의 주택건설실적이 제10조의 2 제 1항 제 3호 및 제11조의 2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한 확인	2.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의 주택건설실적이 제10조의 2 제 1항 제 3호, 동조 제 2항 단서 및 제11조의 2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제품가이드

눈 비도 활용하는 전천후 태양열 시스템

신태양열시스템의 개요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 이용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현재에 이르러서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온수급탕 냉 난방 등 일반 민수용은 물론 특수산업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재래식 태양열시스템은 일사량이 없을 때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몇가지 불합리한 점을 내포하고 있었으나 선진국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의하여 불란서 AXERGIE사에서 금번 AXERGIE 태양열이용시스템을 개발, 세계특허권을 획득하여 햇볕은 물론 햇볕이 없을 때에도 비, 눈, 바람 등 대기열까지도 이용하는 전천후 태양열시스템을 개발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한국엑서지 주식회사에서 본 AXERGIE 태양열이용시스템을 불란서 엑서지사 와 합작투자, 독점수입 판매 시공하고 내년부터는 본 제품을 국산화할 예정이다.

엑서지 시스템의 작동원리

태양열, 비, 바람, 대기의 자연에너지를 태양열 집열판에

특수열전달매체가 반복순환하면서 기화하여 얻은 열과 풀라펌프의 작동(압축) 과정에서 얻어지는 열로 물을 데워 온수급탕 및 이의 상변화의 역과정을 이용하여 냉방에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 가) 온수사용시: 70% 절약
- 나) 냉방 온수양용: 60% 절약
- 다) 냉방사용시: 30% 절약
- 라) 대단위급탕사용시: 70%